

순천대학교 체육시설물관리운영규정

제정 1999. 1. 9
개정 2018. 9. 1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8.9.12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순천대학교 체육시설물(이하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운동장, 실내체육관, 테니스장, 교직원 테니스장, 풋살장을 말하며, “부대시설”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. <개정 2018.9.12.>
2.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전 포함)·광고·게시·관람, 전기·수도의 이용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.
3. “사용자”라 함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4. “공휴일”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.

제3조(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) ① 체육시설 관리책임자는 학생처장(이하 “관리책임자”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관리책임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제3조의2(사용신청)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전산망 또는 공문으로 신청할 경우 사용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9.12.]

제4조(사용허가) ① 관리책임자는 이 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및 학생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9.12.>

②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승인은 관리책임자가 한다. 다만, 외부단체의 대규모 행사에 대한 사용 허가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9.12.>

③ 학생행사의 경우 행사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관리책임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.

1. 학생의 강의 및 실습
2. 이 대학교 주관 행사
3. 이 대학교 소속 학생단체가 주최하는 교육적인 행사
4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
5. 외부단체의 경우 접수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의한다.

제6조(개방 제한)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9.12.>

1. 시설의 개·보수
2.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
3.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<개정 2018.9.12.>

제7조(사용제한)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교육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2.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3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
4.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<개정 2018.9.12.>

제8조(사용시간)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하계(3월-10월)	동계(11월-익년2월)
조 간	05:00-08:00	06:00-08:30
주 간	08:00-19:00	09:00-18:00
야 간	19:00-22:00	18:00-22:00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의 야간은 교육 또는 체육진흥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한다.

제9조(사용료) ① 체육시설의 외부단체에 대한 임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제4조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는 따로 정하며 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9.12.>

제10조(사용료의 면제)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교육 또는 체육진흥목적에 부합하고 교직원 및 학생행사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
3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4.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<개정 2018.9.12.>

② 관리책임자는 60세 이상의 일반인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이용 및 연습시 사용료를 면제한다.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
2. 교육목적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
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
4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
5. 경기장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3조(사용자의 부대시설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
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일,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4조(손해배상)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.

제15조(시설물 관리)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약간명의 위생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생원은 이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9. 1. 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912호, 2018.9.1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제3조의2 별지 제1호 서식>

순천대학교 체육시설물 사용신청서

체육시설물명 :

사용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
사용시간 : 시부터 ~ 시까지(시간)

사용단체명 : 전화번호 :

사용대표자 : 전화번호 :

사용료 납부유무 : 금 액 : _____ 원

순천대학교 체육시설물을 위와 같이 사용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표자 : (인)

20 . . .

주무관	팀 장	과 장	처 장	총 장	협 조	체육부장

~~~~~ 절 취 선 ~~~~~

제 호

## 순천대학교 체육시설물 사용허가서

사용허가 시설물명 :

사용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
사용시간 : 시부터 ~ 시까지( 시간)

사용단체 및 대표자 :

사용료 납부유무 : 금 액 : \_\_\_\_\_ 원

20 . . .

순 천 대 학 교 총 장